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08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34호)	박홍배	2024.6.1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969호)	김주영	2024.8.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97호)	조지연	2024.9.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에 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

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 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 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4항"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인정되면 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기간을 정하여"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 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설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시설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행위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 · 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 • 운 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 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 분) ① (생 략) 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 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 에 관한 법률 | -----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 -----「지방행정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법률 | ----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생 략)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 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 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 <u>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u> <u>상자</u>
 -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 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 <u>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u> 지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 · 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

<신 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 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 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 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 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 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 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 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u>4</u>
<u>제</u>]
항부터 제3항까지
<u>⑤</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저
 -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 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③ (생 략)

제48조의5(과징금)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 ④ (생 략)

제49조(대집행) ① ~ ④ (생 략) 저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음) ②

<신 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 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 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 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 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 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 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 경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u>(7)</u>	 제6항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 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 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 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 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 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 (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 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 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체 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 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u>인정되면</u>
<u>기간을 정하여</u>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행위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신 설>

- 1.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 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공원시설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체육시설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 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u>할 시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
	<u>차·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u>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